

- 2021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
소방장 이하 승진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1년도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소방장 이하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시험일시 : '21. 9. 4.(토) 10:00 ~ 11:15 (75분)
2. 장 소 : 부산세무고등학교 ※ 【붙임 1】 시험장소 안내 참조
3. 선발인원 : 25명 (소방장 13, 소방교 12)
※ 선발인원은 인사운영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시험과목 : 계급별 3과목

구 분	시 험 과 목	문 제 수
소방장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과목별 객관식 선택형 25문제
소방교	소방법령Ⅰ,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1. 소방법령Ⅰ : 소방공무원법 2. 소방법령Ⅱ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법령Ⅲ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1 참고)		
❖ 소방법령Ⅰ·Ⅱ·Ⅲ :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법령관련 문제는 시험일(9.4.)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서 출제		

5. 응시자격

- 가. 제1차 시험일('21. 9. 4.)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1년)에 도달한 자
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

6. 응시원서 접수(계급 통합접수)

가. 기 간 : '21. 7. 23.(금) 10:00 ~ 7. 30.(금) 18:00 / 소방장교 통합

☞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최소는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나. 방 법 : 소방청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접수

☞ 단, 「7. 27.(화)부터 소방장 승진시험 원서접수」는 공문으로만 가능

☞ 응시표 출력은 8. 24.(화)부터 가능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확인내용 : 본인 소속 시·도, 이름, 임용일자, 전화번호 등

7.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나. 최종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서 최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의 합격결정 >

-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8.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1. 9. 28.(화) 14:00

나. 방 법 :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시험정보) 공고

다. 불합격자 성적열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기간, 방법 등 별도 안내 예정

9. 필기시험문제 문의기간 운영

가. 운영기간 : '21. 9. 4.(토) 16:00 ~ 9. 5.(일) 24:00

나. 문의방법 : 소방청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에 신청

* 시험문제 공개요구 또는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다. 문의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 첨부【붙임3】참조

라. 자격요건 :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만 이의제기 가능

마.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문의사항 처리(필요시 운영)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일반사항

가.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09:30 시험장 폐쇄이후 입장 및 응시 불가

다. 응시자 차량을 비롯한 **외부차량의 주차가 불가함**으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주변 불법주차 절대금지**

라. **시험장 전 구역은 금연**이며 평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므로 시험과 상관없는 시험실 내의 물건이나 시설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시험당일 유의사항

가. 응시표에 명기된 응시번호별 시험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분증 미 지참자는 시험응시가 절대 불가**합니다.

- 인 정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자격수첩, 전자신분증, 사진(복사, 휴대폰사진) 신분증 등

다.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 또는 물품을 빌리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배탈·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능하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합니다.(단 수능시계 가능)

마.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책상, 벽 등에 필기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됨

※ 휴대금지물품 예시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나. 시험 OMR 답안지를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 가능하나, 채점 오류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수정액 등은 시험운영본부에서 미제공하며 타인의 것도 사용불가)

- 다.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라.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방송(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가. 본 공고문, 시험당일 안내(방송)하는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나. 특히 시험 시작 전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준용)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6.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라. 기타 시험과 관련한 문의는 소방재난본부 조직관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조직관리계
- ▶ 연 락 처 : 051-760-3023

- 【붙임】
1. 2021년도 승진시험 장소 안내 1부.
 2. 소방전술 및 소방공무원법 세부 출제범위 1부.
 3. 시험문제 문의서 1부.
 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끝.

부산세무고등학교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19 (대연동)



◇ 교 통 편

- ① 부산도시철도 2호선
- **뚝골역 2번 출구** 도보 14분
- ② 노선버스 10, 101
- **부산세무고등학교** 하차 후 도보 3분
- ③ 노선버스 22, 24, 27, 40, 41, 42, 83, 83-1, 108, 138
- **뚝골시장** 하차 후 도보 11분

「소방전술」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 1)

분 야	출제범위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화재조사실무(관계법령 포함)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구조 분야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 확보, 하강, 등반, 도하 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구조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구급 분야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응급의료 개론	
	- 응급의학 총론	
소방차량 정비실무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애,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애, 창상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차량 정비실무	- 소방자동차 일반	
	-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중앙소방학교 신입교육과정 공통교재 (소방전술 I. II. III)** 범위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출제범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체제도

연번	상하위법
1	소방공무원법
2	소방공무원임용령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5	공무원보수규정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10	소방공무원 징계령
11	소방공무원 기장령

성 명	(응시번호)
연락처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2021년도 소방장/소방교 승진시험
질의과목	• 해당과목 :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 득점 산출기준

-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
-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
- 채점관련 기타사항은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 인적사항 및 책형표기

- 답안지를 받으면 본인의 인적정보(성명, 응시번호, 필적감정)를 정확히 기재(표기)하고, 책형란에 본인 문제지의 책형을 “●”로 표기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반드시 기재(표기)사항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무효처리 등)

☐ **답안지 표기방법 및 주의사항**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예시>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

<예시>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② ③

- 농도가 열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한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적색(청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 될 수 있음
-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 책임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승진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일반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별도장소 응시(별도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